

의안번호	2220089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계번호	26D36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61억 9,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989억 6,500만원(연평균 997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장 상임 변경 (안 제5조제1항)	844	846	873	901	930	4,394	879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95,347	95,416	98,281	101,238	104,286	494,571	98,914
합 계	96,191	96,262	99,154	102,139	105,216	498,965	99,793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명의 상임위원을 둔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15조의6 (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 (위원장)	○	—
2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	—
3	안 제15조의6 (감사위원회)	—	(미대상)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¹⁾ 」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감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 ²⁾ 이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임무에 비하여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현행 감사관 조직을 통해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개정안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위원장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원장의 보수, 기관부담금 및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상임으로 변경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대법원장 보수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 부담금 추계
 - － 위원장 보수는 대법원의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대법원장의 보수를 참고하여 추정
-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라 기본경비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
- 비상임 위원장에게 지급되던 경비 중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안전검토수당, 출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제함
 -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비³⁾로,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라 해당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을 추계기간 동안 차감함
 - － 안전검토수당 및 출무수당 또한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은 안전별로 10만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무수당은 위원회 출석 시마다 8만원~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출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해당 지출감소액은 고려하지 않음
- 직책수행경비는 위원장 상근으로 변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3) 현행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 (위원장 비서실 인건비 등)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위원장 비서실 인력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2]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른 비서실 인력(안)

구분	위원장 비서실 인력(안)	
	현행(비상임 위원장)	개정안(상임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급 1명	1급 1명
		3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하며, 그 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상임위원 증원 관련)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각 1명 증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각 2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원되는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상임위원 지원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상임위원 증원 관련 추계 대상이 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또는 사무국)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⁴⁾, 25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하고, 사무처(사무국)를 두고 있지 않는 3,555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장관급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또는 사무과장)의 직급(4급 내지는 5급)을 감안하여 3급

4)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17개에서 16개로 변경

5)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좌하게 하고 있음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가정함

- 각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 및 1·3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소요액을 추정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1명 증원되는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소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2026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1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편성⁶⁾되어 있어, 상임위원 증원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추가재정소요로 보아 추계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3명의 비서실 인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4급 1명, 6급 1명, 9급 1명),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이 현행과 동일한 직급으로 3명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 해당 인건비 지출 소요액을 추정함⁷⁾
 -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의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각 직급의 보수를 준용하며,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증원 인력에 대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자산취득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⁸⁾을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산출된 보수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함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 6)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근거
- 7)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별도 지원 인력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해당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 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2026.3.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3.0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5,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위원장 인건비 등)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원장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대법원의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대법원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 추계
-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라 기본경비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연간 3,48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추계기간 동안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기존 사무공간 및 사무용 집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업무공간 확보 및 자산취득 관련 경비는 본 추계에서 제외

[표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봉급	163,704
	수당	59,412
	합계	223,116

주: 수당에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대법원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2억 3,900만원 등 5년간 12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230	237	244	251	259	1,220
기관부담금	30	31	32	34	35	162
기본경비	14	15	15	16	16	77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차감 소요)	(35)	(35)	(35)	(35)	(35)	(174)
합계	239	248	257	266	275	1,285

주 1.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장 비서실 인건비 등)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위원장 비서실 인력은 다음과 같음

[표 5]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비서실 인력(안)

구분	위원장 비서실 인력(안)	
	현행(비상임 위원장)	개정안(상임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급 1명	1급 1명 3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 기본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 경비 비율 6.3%를 적용하고, 5명의 증원 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 소요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째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비서실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비서실 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현행(비상임)		개정(상임)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천원)
	직급	인원(명)	1인당 보수액(천원)	인원(명)	1인당 보수액(천원)	
보수	1급	—	—	1	160,954	160,954
	3급	—	—	1	138,147	138,147
	4급	1	117,733	—	—	(117,733)
	5급	—	—	2	86,751	173,502
	6급	—	—	1	66,217	66,217
	7급	—	—	1	50,346	50,346
	합계	1	—	6	—	471,433

주: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1~5급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비서실 인력 증원 관련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6억 500만원 등 5년간 31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위원장 비서실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486	500	515	531	547	2,578
기관부담금	64	66	68	71	74	343
기본경비	31	32	32	33	34	162
자산취득비	25	—	—	—	—	25
합계	605	598	616	635	655	3,109

주 1.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상임위원 증원(안 제6조제1항)

- (상임위원 인건비 등) 현재 상임위원이 1명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각 1명 증원,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각 2명 증원되므로, 증원되는 상임위원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장관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가정
 - 각 상임위원의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 및 1·3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고, 증원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상임위원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8]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인원 및 보수 추정(2026년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증원 인원(명, a)	1인당 보수액 (천원, b)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 (백만원, a×b)
중앙	장관급	1	172,914	173
시·도	1급	16	160,954	2,575
구·시·군	3급	510 (255개 구·시·군선거관위×2명)	138,147	70,455
합계				73,203

주 1.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 외, 상임위원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1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직책수행경비 단가는 4급 보조기관(사무국장)에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단가인 월 35만원 적용

－ 직책수행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표 9]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시 직책수행경비 추가재정소요

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증원 인원(명, a)	1인당 지급액 (연간,천원, b)	연간 지급액 (백만원, a×b)
중앙	장관급	1	29,400	29
시·도	1급	16	12,000	192
구·시·군	3급	510 (255개 구·시·군선관위×2명)	4,200	2,142
합계		—	—	2,3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 증가하고 전체 위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상임 위원 1명이 감소하게 되므로 월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⁹⁾
 - －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5,800천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
- 추계 결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시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50억 6,100만원 등 5년간 4,931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75,399	77,661	79,991	82,391	84,863	400,305
기관부담금	9,899	10,246	10,627	11,023	11,435	53,230
기본경비	4,750	4,893	5,039	5,191	5,346	25,219
자산취득비	2,676	—	—	—	—	2,676
직책수행경비	2,363	2,363	2,363	2,363	2,363	11,817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차감 소요)	(26)	(26)	(26)	(26)	(26)	(129)
합계	95,061	95,137	97,994	100,942	103,981	493,11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기준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기준표

지급대상	지급액
위원장	월 2,900,000원
상임이 아닌 위원	월 2,150,000원

- (상임위원 비서실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 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증원 인력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증원 인력은 4급 1명, 6급 1명, 9급 1명으로 가정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고, 총 6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비서실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 인력 증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만 고려함

[표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정원 및 보수 추정액(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정원(명)	1인당 보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4급	1	117,733
	6급	1	66,217
	9급	1	35,953
	합계	3	219,903

주 1.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5급 이상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8,600만원 등 5년간 14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227	233	240	248	255	1,203
기관부담금	30	31	32	33	34	160
기본경비	14	15	15	16	16	76
자산취득비	15	-	-	-	-	15
합계	286	279	287	296	305	1,453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61억 9,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989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장 상임 변경 (안 제5조제1항)	위원장 인건비	239	248	257	266	275	1,285
	비서실 인건비	605	598	616	635	655	3,109
	소계	844	846	873	901	930	4,394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인건비	95,061	95,137	97,994	100,942	103,981	493,118
	비서실 인건비	286	279	287	296	305	1,453
	소계	95,347	95,416	98,281	101,238	104,286	494,571
합 계		96,191	96,262	99,154	102,139	105,216	498,96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